**[학생회칙 개정안]**

**제 3장 17조 5항 (개정)**

**현재:** AI응용학과, 문학문화콘텐츠학과를 제외한 창의융합대학 1학년 대의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안:** 창의융합대학 상상력인재학부 1학년 대의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사유**: 현재 창의융합대학의 경우 AI응용학과, 문학문화콘텐츠학과, 융합보안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상상력인재학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설되는 학과가 있는 것에 반해 학생회칙에 명시된 대의원은 모호한 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만약 개정안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1항에 의거하여 학과별 1명이 기준이 됩니다.

**제 9장 53조 5항 (삭제)**

*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탄핵 시 즉시 서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0장 58조 4항 (삭제)**

*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정,부학생회장 탄핵 시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1장 66조 5항 (삭제)**

* 학생복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학생복지위원장, 부위원장 탄핵 시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2장 72조 5항 (삭제)**

* 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탄핵 시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즉시 선출에 대한 개정 사유**: 현재 학생회 선거는 3월 재선거, 11월 총선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나 현 학생회칙에 의거하면 해당 단위가 공석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선거로 다시 선출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래플러스 대학의 학생회도 공석인 상태인데 이를 학생회칙으로 적용한다면 선거가 무산되었기에 다시 선거를 통해 즉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항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 13장 75조 1항 (개정)**

**현행:**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로 한다.

**개정안:**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재정에 관한 개정 사유**: 재정이란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비, 운영비, 사업예비비 등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재정이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생회가 사용하는 비용을 모두 재정으로 포함시키려 합니다.

우선, 학생회비부터 설명하면 총학생회비의 경우 매 학기 학생들에게 걷어들이는 학생회비를 말하며, 과학생회비는 매년 걷어들이는 학생회비를 말합니다.

보조금은 대표적으로 교비, 기부금,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 다양한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학생회가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걷어들이는 참가비, 학생회비를 통해 사업 진행하여 생긴 수익 등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재정은 학생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기에 이를 재정으로 칭할 수 있기에 학생회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

**제 8장 71조 7항 (개정)**

**현행:** 선거시행세칙 41조 9항의 5,8에 해당할 경우

**개정안:** 선거시행세칙 42조 9항의 5,8에 해당할 경우

**제 8장 72조 4항 (개정)**

**현행:** 선거시행세칙 41조 9항의 1,2,3,4,6,7에 해당할 경우

**개정안:** 선거시행세칙 42조 9항의 1,2,3,4,6,7에 해당할 경우

**제 8장 73조 1항 (개정)**

**현행**

1) 선거시행세칙 49조에서 명시한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3) 선거시행세칙 41조 9항의 6,7에 해당하며, 고의성을 띌 때

**개정안**

1) 선거시행세칙 50조에서 명시한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3) 선거시행세칙 42조 9항의 6,7에 해당하며, 고의성을 띌 때

**제 8장 74조 (개정)**

**현행:** 선거시행세칙 68조, 69조, 70조의 징계는 즉시 통보가 가능하며, 기타 징계의 의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안:** 선거시행세칙 71조, 72조, 73조의 징계는 즉시 통보가 가능하며, 기타 징계의 의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